

「나의 소원 적금」 특약

제 1 조 약관의 적용

나의 소원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적립식 예금약관』,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
제 3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상호부금으로 합니다.

제 4 조 약정기간

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 일 단위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.

제 5 조 최초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천원 이상 원 단위로 합니다.

제 6 조 적립방법

- ① 이 예금의 적립 시, 1회 최저 1천원 이상이며, 1개월 불입한도는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
- ② 고객이 이 예금에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적립을 원하는 경우 월1회 적립하는 자동이체 등록만이 가능하며, 자동이체등록 고객이 추가적립을 원하는 경우 1개월 불입한도에서 자동이체금액을 차감한 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
- ③ 고객이 하나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자동 적립을 원하는 경우 “소비 재테크 서비스”를 신청하여야 하며, 서비스 신청일 다음 영업일 체크카드 사용금액부터 자동 적립이 적용됩니다.
- ④ 하나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자동 적립액이 있는 경우 동 적립액은 1개월 불입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
제 7 조 소비 재테크 서비스

- ① 본 서비스는 하나체크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 설정한 금액이 이 예금으로 자동 저축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, 이 예금과 동일한 명의의 하나체크카드 출금계좌(이하 “출금계좌”이라 함)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② 자동 적립은 고객이 선택한 출금계좌와 연결된 하나체크카드 사용에 따라 이루어지며, 출금계좌는 1계좌만 선택이 가능합니다.
- ③ 자동 적립금액 설정은 아래 ㉠, ㉡ 항목 중 선택이 가능하다.
 - ㉠ 당일 하나체크카드 총사용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, 비율은 10% 단위로 최대 100%까지 설정가능
 - ㉡ 당일 하나체크카드 총사용건수에 일정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, 건당 금액은 1천원 단위로 최대 10만원까지 설정가능
- ④ 1일 자동 적립금액은 최소 1천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1천원 단위로 가능하며,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합니다.
- ⑤ 적립 방법은 당일 하나체크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자동 적립금액을 다음날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 합니다. 단, 적립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합산하여 자동 적립합니다.
- ⑥ 이 예금으로의 적립은 1영업일 1회에 한하여 처리하며, 적립 당시 출금계좌의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

처리불능 시에는 재처리하지 않으며, 그 이후에는 부족자금이 채워져도 적립하지 않습니다.

- ⑦ 적립 당시 출금계좌에 통장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자동 출금 후 적립합니다.

제 8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 지급금으로 합니다.
-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일 현재 고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④ 은행은 아래 ㉠, ㉡, ㉢ 우대금리 항목 충족 여부를 종합하여 최대 (연0.4%)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
 - ㉠ 신규 시 설정한 목표 불입금액을 만기해지 시 달성한 경우 (연 0.2%)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
 - ㉡ 하나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자동 적립 횟수가 10회 이상이면 (연0.1%), 20회 이상이면 (연0.2%), 30회 이상이면 (연0.3%), 40회 이상이면 (연0.4%)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
 - ㉢ 이 예금 신규 시 제공되는 추천인 번호를 타인이 동 예금 신규 시 입력하는 경우, 추천인 번호를 제공하는 계좌 및 추천인 번호를 입력하여 신규한 계좌 모두 각각 (연 0.1%)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계좌별 최대 (연 0.2%) 까지 가능합니다.

제 9조 기타

위 특약 사항은 변경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.